

#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

# 확인서

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21년 7월 일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선임계리사 남 효 성 (인)

# 사업방법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무배당 지킴이 안심보험

### 1.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

명칭	보장유형
무배당 ①지킴이 ②) 안심③)보험④)	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보장
	재해장애보장
	교통재해 장애보장
	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 장애보장
	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장
	재해사망보장
	교통재해 사망보장
	특정사고 사망보장
	5대골절 수술보장
	중대한 화상 및 부식보장
	특정 성인질환 입원보장
	특정 성인질환 수술보장
	식중독 입원보장
	환경성질환 입원보장
	특정 법정감염병 사망보장
	강력범죄보장
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장	

※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), ②), ③) 또는 ④)안에는 특정단체,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

### 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가입나이	보험료 납입주기
1년, 2년, 3년	일시납	만 15세 ~ 80세	일시납

### 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4. 배당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5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의 영업보험료는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의 영업보험료로 구성되며,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.

#### 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8.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# 13. 상품운용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보장유형 중 하나 이상(‘특정사고 사망보장’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)을 선택하여야 한다.

나. 이 상품이 제휴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기업(계약자)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고객, 회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을 제공한다. 이 경우 회사는 보장유형 중 하나 이상(‘특정사고 사망보장’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)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다. ‘나’에 따라 따라 운용되고 한 계약자에 의해 다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약이 이뤄질 때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연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.

라. 제후상품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'나' 및 '다'를 적용하지 않는다.

#### 14. 기타

가.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

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 외 보험료 납입주기,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
나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, 보험업감독규정 제 4-14 조(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)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.

다.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

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(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)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.

라.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 운영방법

- 계약자는 CM채널에서 판매하는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 대상 상품(회사가 보장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CM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)을 가입하는 경우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으로 납입할 수 있다.
-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은, 「약관 제8관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을 통한 보험료 납입 계약에 관한 사항」을 적용한다.
-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 20조(위험 고지 의무)에 따라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해당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-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28조(분쟁 처리 및 조정)에 따라 '정액형보험 가입쿠폰'을 이용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한다.

(별첨 제1호)

## 보험증권의 서식



(별첨 제2호)

##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

(별첨 제3호)

## 보험계약 부활(효력회복) 청약서의 서식